

육아휴직급여(아빠도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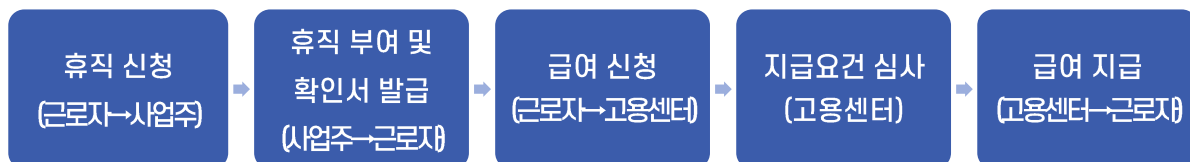
● 사업목적

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**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** 도모

● 사업내용

구분	대상	내용	지원요건 등
육아휴직	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	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(무급: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) *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	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
육아휴직급여	상동	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- (육아휴직급여) ▲첫 3개월: 월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, ▲나머지 9개월: 월 통상임금의 50%(상한 120만원, 하한 70만원) * 급여의 25%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- (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)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, 두 번째 사용자(주로 아빠)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만원) 지급	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● 사업추진체계(지원절차)

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
- 부산고용복지+센터 : 051-860-1914
051-860-2903
051-860-1910
051-860-2063
-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: 051-760-7241~2
- 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 : 051-330-9943~4
051-330-9956